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013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3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업무의 위탁) <신설> (생략)	제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